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0일, 정춘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춘생의원)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

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정부조직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사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5실·2국·12관·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 차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시급하며,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 성평등 기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 필요와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자구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